

# 監查報告書

楊 尚 奎



본 감사는 정관 제15조 4항 및 감사규정 제2조 제3조에 의거 제13회 대한건축사협회 총회에 서면으로 감사보고 합니다.

본 보고서는 주로 2회에 걸친 본부 및 지방 출장감사를 비롯하여 15회에 걸친 본부이사회 참석결과 및 공적으로 표면화 되여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물론 송구스럽게도 감사 개인이 사적으로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서도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제 나름대로 분석 보고하게 되였음을 미리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13년이라는 결코 짧지도 않은 역사를 가진 우리 협회는 한마디로 말해 사회적, 변천 회원증수의 대 방대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였을뿐 아니라 정관 제3조에 명시되어있는 품위보존 상호친목, 권익옹호 등의 목적에도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전국 건축사 개인 개인의 성실하고도 꾸준한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겠읍니다만 이 자리에 모이신 수임받은 우리도 본의 아니게 맡은바 책무에 소홀히 됐거나 소홀히 할수밖에 없었다는 자조적인 사실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어야 할것으로 믿어 집니다.

표면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꽤 장기간 계속 되여온 급별간의 불협화음 근간 크게 물의를 일으켜 온 2급건축사의 재시험문제, 지부설정, 나아가서 전 회원의 뜻에 위배되는 예산편성 및 집행, 고질화 되다 시피한 사무직원의 본연의 자세의 미흡 또한 시간적 경제적 마이너스를 강요받는 명예직(무보수) 임원에 대해 무한 책임을 물으려는 현실등은 우리 협회를 정상궤도에서 이탈케 하는 큰 요인이 되였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의 협회로 전락케 한 원인이라고 믿어 집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조용하고도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양보 하는 미풍속에 신중히 문제해결에 임하실것으로 사료되오나 본감사의 천결도 여기에 꾀력하여 감사보고에 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앞에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우리의 중지와 힘을 하나로 합쳐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외의에 힘을 빌릴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급별간의 불협화음 2급건축사의 재시험문제 등은 지금 당장 누구도 자신있게 해결해낼

방법이 없을것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찾은 대화를 통하여 우선 상호 신뢰하는 풍조를 조성한후 조급하지 않게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수 없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문제에 대하여는 통합예산제도가 없어지지 않는한 예산작성과정과 예산심의때 부터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부설정은 아예 무시된채 예산에 의해 회원수에 비해 다소 가감을 한후 본부우위로 짜여진 예산안을 반나절동안 지부장 연석회의라는 요식을 거쳐 황급히 총회에 제출됩니다만 총회에서도 회순에 따라 업무보고, 감사보고 질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 안에 다소 시간을 소비하고 나면 회의장 관계로 1일 총회를 폐회 하여야 할 시간이 임박해지는 형상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자연 예산심의는 소홀히 해지고 소홀히 된 예산안은 급기야 다소의 수정을 가하여 승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회무를 집행해 나가다보면 그제서야 이런 저런 작고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불평불만이 싹트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바에야 최소 예산총회만이라도 2일로 하든가 예산상 2일총회가 지극히 어렵다고 하면 사전에 위임받은 일부 지방대의원을 모시고 충분히 검토 연구할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각 지부설정에 알맞는 예산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부는 각지부에서 올려온 자금으로 작은 지부는 큰 지부에서 소액이나마 보조하여준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복과하여서도 문제해결에 보탬은 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발전 나갈수록 예기치 않게 급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본부의 차량비 사업비는 모자라 예비비를 써야 하는데 지부는 암말말고 예산대로 집행하라는 식의 일방통행은 우리 협회 입장으로는 그리썩 좋은 일은 못됩니다. 실제 남은 예산은 회수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엄밀히 검토한 후 내려보내야 하는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사무직원의 문제입니다. 이유와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그들은 확실히 타기업체에 비해 저렴한 보수를 받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승진의 기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장기간 같은자리에 근무하게 되는 에도 많아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주 임원(명령권자)을 갈아치우자는 풍문도 자주 귀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은 사무처직원으로 하여금 부업과 새 직장을

찾게되고 부업을 마련한 사람은 부업이 주가 되고 협회 일은 부가 되며 새직장을 찾지못한 사람은 새직장을 찾을때까지 월급이나 받아쓰자는 식으로 우선 정신상태부터 나태하여지고 이완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는 우리가 지급하는 보수만큼도 일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절약이며 어디까지가 낭비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긋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받는 보수만큼도 일을 안하는 직원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낭비하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주와 고용주인 관계는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업무량을 줄여보는 연구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인력감사를 실시하여 정원을 줄여 줄인만큼 보수를 현실화 하든지 이것이 여의치 못하면 기타 불급의 예산을 줄여 현실화 하든지 간에 일단 응분의 대우를 보장하여 자발적으로 열의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풍을 조성시켜줌과 아울러 직무를 성실히 수행치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고용주로써 하시라도 떳떳하게 가차없이 책임을 물을수 있는 관계개선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할것입니다.

넷째, 명예직 임원에 대한 제반 문제입니다. 회원수가 1,800 명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예산도 5억을 넘는 방대한 협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협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장없이 운영해 나가자면 협정판으로 보아 명예직인 회장과 총무이사는 매일 협회사무실에 나와야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사업을 포기하고 협회일만에 전념할수있는 임원을 선출하기란 지극히 곤란한 문제일뿐아니라 설사 그런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분들의 생활보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자기 사무실과 협회를 하루 한두번씩 왕복하며 자기 사무실과 협회의 양립을 기도하나 초능력이 아닌 인간인자라 양쪽이 다 하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건축사이자 행정적이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커다란 실수를 저질르는 경우도 발생하며 때에 따라 조령모개식의 결정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점잖은 헐책을 받는 수도 있읍니다만 좀 악화되면 불신임 운운하는 문제까지도 비약됩니다. 즉 여러분의 손으로 선출한 임원을 여러분이 직접 불심임하게 되는 웃지못할 사태가 발생합니다. 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불신임 받을 만한 임원을 선출한 원인행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 대의원들이라는 결론이 나올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정관상으로 볼때 지부장 대의원, 분소장도 지방임원인 동시에 대한건축사협회 임원임에 틀림없읍니다. 어딘가 잘못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없이 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임기동안만이라도 우리들은 존경할수 있는 회장을 모셔야 하며 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밥들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해 본부 임원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는 안되며 나쁘게 말해 권한도 대폭축소하여 불신임 운운의 요인을 극소화하고 그대신 유보수의 상임이사 제도라도 채택하여 회무를 전담시키는 동시 염중한 책임도 물을수 있는 방법을 신중히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일언하고자 합니다. 본 지부를 막론하고 회계질서는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 섭외비, 경조비, 홍보선전비, 여비등에 대한 사용목적과 방법이 미흡하여 제반업무에 전국적인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4, 5일간의 사무처직원 강습회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물품검수제도가 보완되어야 할것입니다. 사무착오로 인한 다소 부당지출도 발견되었으나 고의적이며 비양심적인 처사는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환수 또는 시정조치로 종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업무면에 있어서 본부 집행부는 시행령개정 과정에 있어서나 수백명의 회원이 행정조치를 당하는 마당에 있어서나 세율인하문제 건축역제 조치에 따른 대응책 사무처장 임명등 여러중요 당면문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통탄하는 동시 재임 6개월동안 아껴주신 여러분과 같은 배로 같이 항해한 본부임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사의를 표하며 감사보고를 끝맺습니다.